

[양식 2]

입찰가격 제안서

제안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업태		FAX번호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입찰명	○ 중환자실 및 연구실 전기공사										
입찰 조건 (가격)	제안금액	일 금 원 ₩ _____ 예정공사기간 : 일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원화(₩) 금액으로 기술 하십시오. ※ 입찰내역서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원가계산서 구성-사회보험료는 법정비율에 맞게 산입)										
○ 본인(사)은 귀 원의 중환자실 및 연구실 전기공사 입찰공고에 따라 가격 제안서를 작성하며 이 제안이 귀 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시공 계약에 따라 위의 제안금액으로 공사 수행기한 내에 시공을 완수할 것을 약속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귀중											

[양식 3]

보안 서약서

서약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업태		FAX번호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과 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이며 다음의 보안 준수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귀 원으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귀 재단의 서면 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의합니다.

2. 당사 직원의 과실은 곧 당사의 과실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당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귀 원의 내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귀 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 및 복구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귀중

[양식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수급업체로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근로자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5년 월 일

계 약 명 :

업 체 명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귀중

[양식 5]

입찰 기술 평가 신청서

입찰 공고번호										
입찰명	중환자실 및 연구실 전기공사									
업체명					사업자 번호					
주소	[우편번호 ;]									
대표자 성명					창립년월일					
업종					사무실 규모	연 M2				
입찰 담당자	성명				E-mail					
	직위				휴대전화					
구분	면허종류		면허번호		시공능력평가액		도급순위/전체			
주					백만원		/			
부					백만원		/			
부					백만원		/			
주 면허 기준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합계			
시공능력 평가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도급순위/전체	/		/		/					
품질인증					환경인증					
재무상태	자본금		당기순이익		2023년도 매출액					
					백만원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유효기간					
					~					
기술인력 보유 현황	기술직					관리직	합계 (기술+관리직)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기술직 합계						
귀원의 상기 입찰에 참여하고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기술 평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이사 (인)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귀중										

[양식 6]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는 로 한다.
-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의 전체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해 전체계약이행의 책임

을 진다.

제7조(계약이행)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한다.)은 자신의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다.

②주계약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주계약자는 공사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대가지급(선금,기성금)은 대표사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회사 :

나) 회사 :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①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해당 구성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계약자가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인)
(인)